

사회봉사활동 시행규정

개정 2022.02.23. 개정 2024.02.01. 개정 2024.10.1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을 함양시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18.>

제2조 (봉사활동 신청자격 및 대상자)

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 한다. <개정 2024.02.01.>

제3조 (봉사대상기관 및 인정범위)

- ① 사회봉사활동 대상기관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본교에 봉사활동을 요청해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하되, 사회봉사활동의 인정범위는 [별표1]과 같다. 다만, 학 생이 임의로 선정한 대상기관 및 단체는 심사 후 결정한다.
- ② 10명 이상의 학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농어촌 봉사활동 및 재난지역 봉사활동도 인정한다.

제4조 (봉사활동의 내용)

학생의 봉사활동 내용은 대학생 수준에 알맞아야 하고, 농어촌과 사회복지기관(고아원, 양로원 등)의 봉사활동 내용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제5조 (학점인정 및 성적산출)

- ① 사회봉사활동으로 재학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사회봉사과목으로 교육과정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며, 등급은 표기하지 않는다. <개정 2013.12.18.>
- ② 교과목 이수구분은 P(Pass) 또는 F(Fail)로 기재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며 평균 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. <개정 2022.02.23.>
- ③ <삭제 2022.02.23.>
- ④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30시간을 1학점으로 하고 60시간을 2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2.23., 개정 2024.02.01.>
- ⑤ 사회봉사활동의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. <개정 2022.02.23.>

제6조 (봉사활동 실시시기)

사회봉사활동은 재학(휴학기간 포함) 중에 실시하되, 실시시기는 본인이 선택한다.<개정 2013.12.18., 2022.02.23., 2024.02.01.>

제6조의2 (봉사활동 수강신청 학기)

사회봉사활동 수강신청 학기는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신청한다.<개정 2022.02.23.>

제7조 (봉사활동 수강신청 학기) <개정 2013.12.18.>, <삭제 2024.10.14.>

제8조 (봉사활동 신청절차) <삭제 2013.12.18.>

제9조 (봉사활동 신청서 제출기한) <삭제 2013.12.18.>

제10조 (학점인정 신청)

- ① 사회봉사활동 후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나 우리 대학의 봉사활동확인서(별지 1호 서식)를 학과에 제출한다. 학과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심의한 후,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.<개정 2022.02.23., 2024.02.01.>
- ② <삭제 2013.12.18.>
- ③ <삭제 2013.12.18.>

제11조 (사회봉사활동관리)

- ① 사회봉사학점은 해당 학과에서 일괄신청하고 담당자는 학과별 개인별 학점을 관리 한다.
- ② 담당자는 사회봉사 활동 인정범위 및 기관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.

제12조 (단체봉사활동 지도교수 지정운용)

단체 사회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용한다.

제13조 <삭제 2022.02.23.>

제14조 (재해발생시의 책임)

학생이 사회봉사활동 기간 중 부상 등을 입거나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15조 (기타사항)

-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② <삭제 2013.12.18.>

③ 헌혈 1회당 봉사시간은 4시간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10.14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

본 규정 시행일자 이전 사항은 사회봉사활동 지침에 의한다.

부 칙 <2013.12.18.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2.23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02.01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10.14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봉사활동 확인서

인적사항	학 교 명	혜전대학교	
	학 과		
	학번·성명		
활동일시	20 년 월 일 ()시 ~ ()시 활동시간 : ()시간		
	※ 봉사시간 및 시간은 수정할 수 없으며 스카치테이프부착요. 수정시 날인요 ※ 사회봉사인정시간은 시간수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ex. 2시간(○), 2시간 30분(×)) ※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임.		
활동장소			
활동내용 (구체적)			
활동평가 (확인자가 간략하게 기술)			
확인기관명		전 화	
위와 같이 소정의 봉사활동을 확인합니다.			
20 년 월 일			
확인자 직책 :		성명 : (인)	

※ 시설종류에는 노숙자쉼터, 부랑인시설, 아동복지, 여성복지, 장애인복지, 노인복지, 사회 복지관, 사회 단체,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단체종류에는 환경단체, 소비자단체등으로 기재

(별지서식 제2호) <삭제 2013.12.18.>

봉사활동 인정 범위

분야	봉사 활동 내용
사회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장애인 복지회관 봉사② 양로원 업무 보조 및 근로③ 고아원 봉사 및 근로④ 육아원 보조 및 근로⑤ 모자보호원 근로
소외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농어촌 봉사② 도시빈민지역 봉사③ 소년소녀가장 가구 봉사④ 장애인행사 보조⑤ 재가 장애인 보조⑥ 독거노인 가사 보조⑦ 저소득 모자가정 가사보조⑧ 생보자 자녀 학습 보조⑨ 무의탁노인 간병 등 보조⑩ 경로당 친목 보조⑪ 산업재해현장 모니터⑫ 입원환자 간호 및 대화
환경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교내외 청소② 주차장 정리③ 소음공해 방지 활동④ 환경오염 모니터⑤ 공원청소 및 시설훼손 감시⑥ 재활용운동 참여⑦ 기타 환경운동 참여
시민 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YMCA 자원봉사자②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③ 공명선거 모니터④ 소비자고발 상담⑤ 청소년 유관단체 자원봉사자⑥ 시민회관 등 정리 및 보조⑦ 헌혈 및 헌혈운동 보조 (단, 헌혈 봉사인정 시간 : 5시간 / 2회, 헌혈증 사본 첨부시 인정 되며, 입학한 당해년도 3월 이후 헌혈부터 해당됨.)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공공기관 업무 보조② 수상구조대원 및 각종 안전요원③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